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15 호
------	---------

제출연월일:2000. 3. 3.
제 출 자: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 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4조)
- 다.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10조)
- 마.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15조,안 제16조)
- 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24조의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상남도세정13415-11286('99.12.20)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0 - 7 호(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4. 본문 : 불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최초로 취득한 1대”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로 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동조 동항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

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최초로 취득하는 1대”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허가를 받은자”를 “등록을 한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정한다.”

제9조 본문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제5항”으로 하고,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으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으로 하고, 제2호중“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 -----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 -----</p>

현 행	개 정 안
<p><u><단서 신설></u></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u>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③-----</p> <p>-----</p> <p>-----</p> <p>-----</p> <p>1. -----</p> <p>-----<u>등록한 자</u>-----</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u> <u>한</u>-----</p> <p>-----</p> <p>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u>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단서 신설></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감면) ①----- ----- ----- ----- ----- ----- -----장애인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 ----- ----- -----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4.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u>허가를 받은</u>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u>허가를 받은</u>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u>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등록을 한 자</u>-----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 ----- -----.</p> <p>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기본법</u>----- -----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3. (생략)</p> <p>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p>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1~3 (생략)</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u></p>	<p>-----</p> <p>-----</p> <p>-----</p> <p>-----</p> <p>-----</p> <p>-----<u>임대주택</u></p> <p><u>법 제12조 규정</u>-----</p> <p>-----</p> <p>-----</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p> <p>-----</p> <p>-----</p> <p>-----</p> <p>-----</p> <p>-----<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u></p> <p><u>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u>-----</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생략).</p> <p>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건축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8조의2-----</p> <p>----- 동법제28조의5</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턴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365/영업기간(일수)</u></p> <p><u>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u></p> <p><u>제24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u></p> <p><u>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u></p>	<p><u><삭 제></u></p> <p><u>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감면)-----</u> <u>-----</u> <u>-----조세특례제한법</u> <u>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u> <u>항-----</u> <u>-----</u> <u>-----</u></p>

현행	개정안
<p>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u>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p> <p>2.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u>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	<p>----- ----- -----<u>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u>----- ----- -----.</p> <p>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p> <p>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p>